



서울특별시 SH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 및 이행 철저

1.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일명 박원순법)을 마련하여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기조를 혁신대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도 최근 박원순법에 발맞추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이를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전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시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직무관련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 일체의 금품 등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제17조 ①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하 생략)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선물·향응은 3만원 이내 가능함.

제17조 ① 임직원은 ...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로 제공되는 선물·향응은 3만원 이내. 단, 직무와 관련없이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향응은 5만원 이내

나. 골프행위 관련 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5조 관련)

- 골프 등의 접대 행위는 “향응”에 해당됨.

제2조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득이한 경우 신고대상임. (붙임1) ※ 신고하더라도 자비 부담해야함. 타인부담시 향응 수수에 해당됨.

제5조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자와 함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

가. 골프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직무와 관련없는 자와의 골프는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제5조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무와 관련없는 자와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하는 골프 행위

다.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여야 함(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

제29조 ① 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렴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수동은 감봉이상, 능동은 정직이상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 개정중(인사팀-5087호, 2015.10.30.))

제61조 ③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별표 11-4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 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원상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자 ... 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여야 한다.

(별표11-4)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안)

- 금품이나 향응 수수시 수동은 감봉이상, 능동은 정직이상

행 정 감 사 팀 장

수신자 SH팀01~71, SH센터01~11

팀 원	김해리	행정감사팀장	민경배	감사직무대행	전결 11/18 민경배
-----	------------	--------	------------	--------	------------------------

협조자

시행 행정감사팀-3095 (2015.11.18) 접수 ()
방참번호 감사직무대행 방참 제229호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전화 3410-7525 전송 3410-7739 / golfcool@i-sh.co.kr / 공개